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993

발의연월일: 2024. 10. 29.

발 의 자: 손명수 · 이연희 · 박 정

김한규 · 한민수 · 박해철

남인순 • 이훈기 • 문정복

정태호 • 윤종군 • 김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발주청이 대형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을 시행할 때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맡겨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엔지니어링 일부를 발주청 승인을 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엔지니어링은 통상적인 건설사업과 달리 발주청의 승인 만 받으면 제한없이 하도급이 가능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하도 급계약에 발주청의 개입 여지가 높은 측면이 있음.

또한, 하도급의 원칙적 허용에 따라 발주청 및 수급인의 고유 업무를 하도급하여 특정업체와 장기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특정업체의 상주기술인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발주청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등 무분별한 하도급 관행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의 총체적인 부실

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한편, 「형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공제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시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는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무분별한 하도급에 따른 부실을 방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을 금지하며,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하도급요건의 방법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하도급 제한을 특정 사업자와 하도급계약할 것을 요구하거나 상주기술인을 현장에서 이탈하도록 요구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1조제2항제2호, 제35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제36조 및 제9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 나. 「형법」 개정('18.1.7)에 따라 벌금형도 집행유예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개정은 이뤄지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설기술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어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안 제39조제5항제5호).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77조제1항 후단 신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3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6조(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엔지니어링을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있다.
 - 1. 발주청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 2. 건설엔지니어링의 품질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 ③ 수급인이 건설엔지니어링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하수급인과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⑥ 발주청은 특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하도급계약할 것을 요구하거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상주기술인(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현장에서 이탈하여 근무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에 따른 발주청의 서면 승낙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5항제5호 중 "형"을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다.

제7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91조제2항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할 것을 요구하거나 상주기술인을 현장에서 이탈하여 근무 하도록 요구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 제2호, 제36조 및 제91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공제조합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생 략) 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 · 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 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 할 수 있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2. 제35조제4항에 따른 발주청 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 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 도급을 한 경우 우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 엔지니어링사업) ① ~ ③ (생 엔지니어링사업) ① ~ ③ (현 행과 같음) 략) ④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 <삭 제> 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도급받은 경 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 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승인 절차 등 <삭 제>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

<u>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신 설>

- 제36조(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자는 도급받은 건설엔지니어링 을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 1. 발주청의 서면 승낙을 받을 <u>것</u>
 - 2. 건설엔지니어링의 품질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 설엔지니어링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 ③ 수급인이 건설엔지니어링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하수 급인이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 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 ④ (생 략)

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

- ⑤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 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요 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관 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⑥ 발주청은 특정 건설엔지니 어링사업자와 하도급계약할 것 을 요구하거나 건설사업관리용 역의 경우 상주기술인(공사현 장에 상주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현장에서 이탈하 여 근무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에 따른 발주청의 서 면 승낙의 절차 및 방법,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행하게 할 수 없다.

- 1. ~ 4. (생략)
- 5.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u>형</u>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⑥·⑦ (생 략)
- 제77조(지도·감독 등) ① 국토교 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 조합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② ~ ④ (생 략) 제91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신 설>

1. ~ 4. (현행과 같음) 5
o. <u>금고 이상의 형</u> -
 ⑥·⑦ (현행과 같음)
제77조(지도·감독 등) ①
<u>이 경우 국토교통부장</u>
관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7
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여야
<u>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1의2.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할 것을 요구하
<u>거나 상주기술인을 현장에서</u>

	이탈하여 근무하도록 요구한
	<u>자</u>
<u>1의2.</u> (생 략)	<u>1의3.</u>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